1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

❍ 연도별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

(단위 : 건, 백만원)

구 분	합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신고건수	2,491	28	95	138	162	237	366	336	384	371	374
포상금지급건	1,092	2	49	76	92	118	136	135	148	180	156
포상지급액	4,137	14	92	270	242	368	581	436	657	763	714

주) 신고포상금 심의·의결 일자 기준

* 신고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등 사실확인 후 부당금액 확정,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확정·지급

❍ 포상금 지급건('09년~'18년)의 신고인별 부당적발금액

(단위 : 건, %, 백만원)

신고인	포상금 지급건	%	부당적발금액	%	포상금	%
계	1,092	100.0	45,330	100.0	4,137	100.0
내부종사자	780	71.4	37,318	82.3	3,645	88.2
수급자 및 그 가족	102	9.3	1,831	4.1	122	2.9
일반인	210	19.3	6,181	13.6	370	8.9

부당청구 신고와 포상금 지급 절차

신고접수	➡	사실확인 및 부당금액확정	➡	포상금지급결정 (포상심의위원회)	➡	포상금 지급
전국민 누구나 (인터넷, 방문, 우편)		현지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		이의신청,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 종료 후 포상금 지급결정		지급신청서 접수일로 1개월내 지급

※ 최초 신고접수에서 포상금 지급까지 장기간(최대2~3년 이상) 소요될 수 있음

2 포상금 지급기준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별표3)

신 고 인	지 급 기 준	
1.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기타 직원 등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및 복지용구 제조업자·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	장기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금(이하 "징수금"이라 한다)이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	징수금 × 30/100
	징수금이 500만원 초과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	150만원 + (500만원 초과 징수금 × 20/100)
	징수금이 2천500만원을 넘는 경우	2억원의 범위에서 550만원 + (2천500만원 초과 징수금 × 10/100)
2.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·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	징수금이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인 경우	1만원
	징수금이 2만5천원을 넘는 경우	500만원의 범위에서 징수금 × 40/100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	징수금이 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	징수금 × 20/100
	징수금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	200만원 + (1천만원 초과 징수금 × 15/100)
	징수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	500만원의 범위에서 350만원 + (2천만원 초과 징수금 × 10/100)

비고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사례

○ A 요양시설(입소시설)은 간호사 1명이 11개월간 전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월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

… 1억원 부당청구 적발

○ B 요양시설(입소시설)은 요양보호사 3명이 21개월간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만 전담하여 해당 직종에 근무인력수가 부족하였으나,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

… 2천4백만원 부당청구 적발

○ C 재가장기요양센터(주야간보호)는 요양보호사 1명, 조리원 1명이 3~13개월간 매일 6시간미만 근무하였으나 월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

… 3천1백만원 부당청구 적발

○ D 재가장기요양센터(재가기관)는 수급자 2명에게 8개월간 미신고 종사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

… 2천2백만원 부당청구 적발

○ E 재가장기요양센터(재가기관)는 수급자 17명에게 32개월간 요양보호사1명과 무자격자 1명이 방문목욕을 제공한 후 신고된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

… 1천9백만원 부당청구 적발

4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 안내

1.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전 국민 누구나 가능

2. 포상금 내부종사자는 최고 **2억** 원, 수급자 또는 그 가족/일반인은 최고 5백만원

3. 신고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

※ 신고서는 6하 원칙(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)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

4. 신고방법

① **방문·우편** 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, 지역본부, 공단본부 접수

② **인 터 넷**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접수
(민원상담실→ 포상금제도안내→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·포상금제도 안내)

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

5. 신고관련 상담전용 전화 : 본부 033-811-2008

서울 · 강원 02-2126-8620	**부산 · 울산 · 경남 051-801-0470**
대구 · 경북 053-650-9940	**광주 · 전라 · 제주 062-250-0374**
대전 · 세종 · 충청 044-251-7561	**경기 · 인천 031-230-7914**